

第120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4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審查報告書	6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0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4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7面
7.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結果報告書	20面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4.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제23조)

다.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행정자치부 운영12100-274, 2002. 3. 23)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서울특별시 인사12135-1046, 2002. 3. 28)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001. 6.30, 대통령령 제17285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년도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안 제23조제5항)

다. 검토의견

- 종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상에는 결근이나 정직 및 직위해제와 마찬가지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 3월 28일 시달된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휴직자에게도 연가 수혜를 확대하였음
- 이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서 개선된 방식에 의하면 휴직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면 휴직한 공무원도 법령에 보장된 연가를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문) 공무원 연가와 병가일수가 1년에 며칠이며, 휴직은 며칠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답) 연가는 1년에 23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병가는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문) 성실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답) 공식적으로 이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 현재 동 행정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원화되어 업무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답) 인사권이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동 행정공무원의 인사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가. 개정 이유

- 200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총무과 소속이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200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종전 총무과 소속이었던 동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소속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 중 제6조의 위원회 당연직인 간사 및 서기의 직명을 개정된 직명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임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문) 현재 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동 경계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동사무소가 동의 중앙에 위치해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4.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총무과에 소속되었던 동 행정업무팀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업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나. 주요골자

-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동행정업무담당주사”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변경(제6조)

다.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3.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案)

審查報告書

2002. 4.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가.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
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안 제4조제2항)
- 위원회의 운영 등 : 법령의 규정 및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및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 제5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설치 : 300만원 이하
 - 옥외광고업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 100만원 이하(안 제12조제1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불법 가로,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 설치시 500만원 이하(안 제13
조제1항)

다. 제정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2001. 7. 24, 2001. 11. 22)
-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 표준안 시달(2002. 2. 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제정 이유

-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동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안 제4조제2항)
 -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안 제5조)
 - 법령의 규정과 조례(시조례 포함) 또는 서울특별시고시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사항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안 제12조)
 -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설치 : 300만원 이하
 - 옥외광고업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 100만원 이하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안 제13조)
 - 불법 가로·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설치시 500만원 이하
-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세부기준 및 방법 등(안 제15조)
 - 특별정비사업에 의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지원 등

다. 검토의견

-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되어 자치구의 고유사무가 되었음
- 이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제정(안)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음

라.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현황

○ 추진 개요

- 대 상 : 4차선이상 도로(7개 노선), 불법 세로형간판, 입간판(전역)
- 정비물량 : 3,065개(기존 2,311건 추가 754건)
- 정비기간 : 2002년 3월 ~ 12월(상반기 중점정비)

○ 추진 경위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추진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완화 고시 2001-97호(2001.4.6) 6차선 이상 도로변의 광고물 표시제한 및 완화
 - 업소당 표시가능한 간판의 수량을 3개에서 2개(곡각 4개→3개)로 제한
 - 허가·신고대상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
- 2001. 7.24 법개정 공포(법률 제6490호)
 - 위반광고물의 제재조치 강화 : 벌금·과태료 현실화, 이행강제금 신설
 -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이관함
- 2001. 9. 1 개정법 시행
- 2001.11.22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대통령령 제17412호)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추진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및 제한완화 변경고시 2002-39(2002.2.15) 4차선이상 도로변으로 확대 고시
- 2002. 3. 8 서울특별시중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입법예고
- 2002. 3.19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공포

○ 추진 실적

- 2002.1 ~2.20 불법광고물 조사
- 2002.2.21~2.28 불법광고물 시정명령 및 계고,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 2002.3. 4~5.30 행정대집행(철거) 시행
- 현재까지 추진 실적(목표의 50%)

2002.4.5 현재

종류별 합 계			가로			돌출			세로			지주			창문		
			계	자진	용역	소계	자진	합계	소계	자진	합계	소계	자진	합계	소계	자진	합계
1,506	160	1,346	334	21	313	221	24	197	377	44	333	112	2	110	34	12	22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천 상 옥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동 연 호)

문)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답) 고정광고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동광고물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 위탁교육에 있어 간판업자를 먼저 교육시켜 광고물 부착 후 그것이 불법 간판이 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앞으로 간판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4.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가. 개정이유

-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시가스시설 설치비를 저금리로 융자금 지원 및 융자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융자범위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의 70%이내에서 80%이내로 확대(안 제7조)
-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리 6%에서 3%로 인하(안 제8조)
- 종전에 대출한 융자금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율을 적용(안 부칙)

다.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통보
(서울특별시 산업57244-355, 2002. 2. 6)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현행 우리 구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가 인근 자치구와 서울시의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시중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용자한도를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촉진하면서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용자범위 중 사용시설비 및 공급시설비 “70%” 이내를 “80%” 이내로 각각 확대(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 이자율 년리 “6%”를 “3%”로 각각 인하(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 기 대출 용자금 변경이율 적용(안 부칙 제2항)

다. 검토의견

-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해 당초 정책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대폭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도시가스사업기금 대출금리가 현재 시중의 금리가 저금리 추세로 인하여 6%~8%대에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사업기금 대출금리 6%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 기금 용자금 활용 실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기금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 활용도를 증대시켜 도시가스 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사업기금 금리의 인하조정 및 용자한도 확대 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의 대출금리가 자치구별로 3%~8%로 차이가 있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금리는 3.5%~5.5%인 점을 감안하면서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상응하고 타구 금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적정금리 인하폭의 검토가 필요함

라.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현황

- 기금 자산 및 용자현황(2002.2.28 현재)
 - 기 금 : 총 2,416,078천원
 - 용자실적 : 3,300,761천원(기 상환액 2,966,461천원 포함)
 - 금 리 : 6% (2000.3.8 인하조정)
 - 용자한도 : 사용시설자금 및 공급시설자금(시설비의 70% 이내)
- 용자실적(최근 5년간)

(단위:천원)

년 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실 적	259,250	180,600	155,940	389,880 (공급시설자금 239,000천원 발생)	22,236

○ 자치구별 도시가스사업기금 용자 금리현황

구 분	용자범위	대출금리	구 분	용자범위	대출금리
종로구	70%	6.0	마포구	조례 폐지	-
중 구	70%	3.0	양천구	조례 폐지	-
용산구	조례 폐지	-	강서구	90%	4.74
성동구	70%	6.0	구로구	90%	6.0
광진구	70%	5.5	금천구	90%	8.0
동대문구	80%	6.0	영등포구	조례 폐지	-
중랑구	90%	4.8	동작구	70%	8.0
성북구	70%	4.0	관악구	70%	8.0
강북구	70%	6.0	서초구	70%	8.0
도봉구	70%	8.0	강남구	70%	6.5
노원구	70%	8.0	송파구	조례 폐지	-
은평구	70%	8.0	강동구	조례 폐지	-
서대문구	70%	6.0			

※ 조례 폐지 구 : 도시가스 보급률 90% 이상

마. 서울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 권장사항(산업 57244-765, 02.4.1)

○ 금 리 : 자치구별 년리 3.0%~8.0% → 3.5%~5.5%

- 년리 3.5%~5.5%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

※ 서울시 기금 운영금리 : 4.5%

○ 용자대상 : 공급시설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제외

○ 용자범위 : 시설공사비의 70%~100% 이내

○ 기 타

- 일정 보급률 도달시(90~95%) 기금 폐지 → 기금의 기능 유지

- 대출금리 규정을 규칙에 명시 : 자치구 자체 결정

- 용자시 보증보험료의 인하 : 대출금리 인하로 보험료 보전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이 동 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문) 용자금의 이자율을 연리 6%에서 3%로 인하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86.2%로 잡고 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고지대 및 암반 지역으로, 이곳은 사업성 저하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도시가스 회사에 저금리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5.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4.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하 철 승)

가. 개정이유

- 현재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을 10인으로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10인을 20인으로 정비하여 구민참여와 실천운동으로 전개 및 확산 등

다. 개정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
- 환경기본조례 제21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상 1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환경보전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증원하여
- 우리 구 환경보전업무 추진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단체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원 “1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개정(안 제21조)

다. 검토의견

- 현행 조례상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원 중 환경보전분야에 관련된 공무원 8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시민단체 등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는 2명뿐임
- 이는 조례 제21조의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원을 20인 내외로 개정하여 환경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라. 환경보전위원회 구성현황

- 구성 위원수 : 총 8명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생활복지국장
 - 위 원 : 6명
 - 당연직(공무원) :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진흥과장, 환경위생과장
- ※ 시민단체 등 일반 시민 위촉 위원 없음

○ 기 능

-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참여
- 환경보전의 구민 참여와 실천운동 전개
-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제시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6.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4. 2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임 질 택)

가. 개정이유

-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기금 지출의 근거법규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제1항제4호 기금의 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토록 개정

다.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운용관리 중인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제3조 기금의 사용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추가하여
- 재난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시 기금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시 주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의 용도에 “부상자 치료”를 삽입토록 개정 (안 제3조제1항제4호)

다. 검토의견

-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위해로부터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주민들에게 증대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1년 9월 29일 관련조례 개정으로 재난시 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본 조례개정(안)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재난 발생시 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다만 앞으로 실제 기금 지출시 치료대상 과다 및 치료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기금적립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부상자 치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 법적 근거
 - 재난관리법
 - ┌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정립)
 - └ 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 ※ '98.10.13 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공포
- 기금 적립 및 용도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중 보통세(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세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정립
 - 2002년 4월 현재 우리 구 총 적립금 : 205,746천원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 재난대비 대피 또는 퇴거변경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 구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 비용의 일부 용자(안전대책위원회 심의)
 - ┌ 위험시설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서울特別市都市計劃條例改正建議要求(案)

結果報告書

2002. 4. 25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9일 · 안재홍 의원 외 5인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20회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2. 4. 25)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안 재 홍 의원)

가. 제안이유

-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과 선진사회의 장묘문화 변천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 1월 12일자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 문화로 시행하여 불필요한 국토의 훼손과 인적·물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에는 전적인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그러나 주문의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등에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도시계획 차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폐율(30%)이나 용적률 등 상당한 사권의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제도화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납골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관지구의 지정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을 건의합니다.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현 수 한 위원)

(답변자 : 안 재 홍 의원)

문) 매장으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고 사용할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매장문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화장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일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심에 납골당시설이 있어 공원화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건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나라도 매장문화에서 화장 등으로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 등에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을 가하면서까지 제도화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는 납골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취지와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안입니다.

4. 意見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The page contain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document. The text is too light to transcribe accurately.]